# 건설현장의 위험성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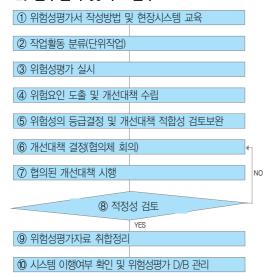


한진중공업 창전동 서강이파트 현장 임 재 봉 차장

#### 1. 위험성평가의 목적

현장의 건설시공 및 관련 운영활동으로 인하여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, 물적, 인적측면의 모든 잠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·관리하여 위험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# 2. 업무절차 및 주요업무



- ① 위험성평가 시기, 절차, 기준 정립 및 위험성 평가 D/B용 작업활동 분류(안전팀)
- ② 공종별 단위작업 분류(협력업체소장, 원청 관리감독자)
- ③ 단위작업에 따른 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평 가서 및 2주간 공정표 작성(협력업체소장, 원 청 관리감독자)
- ④ 위험요인 파악 및 도출, 관리대상위험요인의 대책수립(협력업체소장, 원청 관리감독자)
- ⑤ 위험성평가서의 적합성 검토, 위험성평가등 급 결정 및 관리대상 확정, 추가적 위험요인 도출(원청 관리감독자, 해당 공구장)
- ⑥ 위험성평가서 취합 및 회의준비, 추가적 위 험요인 도출 및 토론(안전관리자)
- ⑦ 협의체회의 결과에 따른 대책시행, 안전조치 담당자 및 조치기간 지정(협력업체소장)
- ⑧ 협력업체결과에 따른 점검표 작성, 점검 및 미조치사항 차기회의 송부(안전관리자)
- ⑨ 위험성평가 자료 정리, 연1회 안전팀으로 자료송부(안전관리자)
- ⑩ 시스템 이행여부 현장점검, 위험성평가 D/B



구축 및 UP-DATE, 신규개설현장에 자료 배포

# 가. 위험성평가서 작성방법 및 현장시스템 교육

- (1)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행위주체인 관리감독자, 협력업체소장, 현장소장을 안전팀 및 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자료배포 및 교육을 실시한다.
- (2) 안전관리자는 상기 (1)항의 행위주체자에게 위험성평가를 통해 진행되는 현장시스템( $P \to O \to C \to A$ )에 대한 분기별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.

#### 나. 작업활동 분류

- (1) 협력업체 소장은 해당 공종 시작 전 공종분 류표 참조하여 작업활동을 분류하고 관리감독자 가 검토한다.
- (2) 검토가 완료된 공종 분류표를 참조하여 협력 업체소장이 해당 세부공정을 확인한다.
- (3) 신공정, 신공법인 경우 관리감독자가 먼저 단위작업을 분류하고, 그 분류내용을 안전관리자 및 협력업체에 송부한다.
- (4) 협력업체 소장은 관리감독자가 분류한 공종 분류표를 참조하여 세부공정을 검토한다.
- (5) 안전관리자는 1회/년 공종분류표를 안전팀 으로 송부한다.
- (6) 안전관리자는 작업활동분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적 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# 다. 위험성평가 실시

- (1) 협력체 소장은 작업활동 분류표에 해당하는 공정의 재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공종의 위 험요인, 대상자 및 원인 등을 미리 파악한다.
- (2) 위험성 평가시 불안전한 상태뿐만 아니라.

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한 위험요인도 고 려하여야 하다

#### 〈위험요인 도출시 고려사항〉

- ▶ 불안전한 상태 : 작업체계 및 절차. 취급물질의 위험성
- ▶ 불안전한 행동 : 작업자 숙련도 등 특성, 작업 이해정도, 위험 성에 대한 무지
- ▶ 공사 진행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주변여건 등
- ▶ 과거 동일공종의 재해사례
- (3) 협력업체 소장은 예상된 위험요인을 위험성 평가서에 등록한다.

#### 〈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〉

- ▶ 현장 위치 및 주변상황: 복잡한 도심지, 지하구조물 여부
- ▶ 지형상태 : 연약지반, 지하수위 등
- ▶ 지장물 상태: 가스관, 상하수도관, 전련구, 송유관 등
- ▶ 주요공법 : 신공법에 대한 대책의 적절성, 재해발생 가능성 여부
- ▶ 시공경험: 직원의 관련업무 시공경험 유무

#### 라. 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

- (1) 위험성평가 등급의 결정은 공사별, 협력업체 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.
- ① 토목공사 : 차량건설기계 운반, 하역작업 등 재해발생 빈도 감안
- ② 건축공사: 추락, 전도, 붕괴, 도괴, 낙하 등 재해발생 빈도 감안
- ③ 기계, 전기공사 : 추락, 협착, 낙하, 전도 등 재해발생 진도 감안
- ④ 협력업체 특성 고려: 현장규모와 특성, 작업 공정의 난이도, 위험성(고소작업)
- (2) 협력업체소장은 위험등급 중 중점관리대상 등급(A-C)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위험성 평가서에 기입한다.

#### 〈개선대책 수립시 고려사항〉

- ▶ 기술적 측면 : 불안전 상태제거를 통한 근원적 안전확보 여부
- ▶ 교육적 측면 : 불안전행동 억제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 전수치 준수
- ▶ 관리적 측면 : 관리감독 가능여부(시설물 점검, 보수 및 보호 구착용 상태)
- ▶ 근원적인 대책수립이 되지 않을 경우 공법개선 여부

(3) 협력업체소장은 작성된 위험성평가를 협의 체회의 3일전 오전 10시까지 관리감독자에게 제 출한다.

# 마. 위험성의 등급결정 및 개선대책 적합성 검토 보완

- (1) 관리감독자는 협력업체소장에 의해 작성된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으로 예상되는 피해형 태와 등급을 정확히 기입한다.
- (2) 관리감독자는 작성된 위험요인을 보고 위험 성평가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객관적으로 위험등 급(A~E)을 결정하고 위험성평가서에 기입한다.
- (3) 협력업체소장에 의해 작성된 위험성평가서를 관리감독자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적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서 담당 검토 의견란에 기 입한다.

#### 〈개선대책 검토시 고려사항〉

- ▶ 기술적 난이도에 따른 문제점
- ▶ 경제적인 대책의 선정여부
- ▶ 새로운 위험의 발생
- ▶ 실행 우선순위의 적절성
- ▶ 대책이 무시되지 않고 적용되는지의 여부
- ▶ 대책수립 후 허용가능한 위험범위로의 이동여부
- ▶ 동일위험요인의 작업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성 증대 여부
- (4) 관리감독자는 검토된(결재) 위험성평가에 대해 협의체회의 2일전 오후 1시까지 현장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.

# 바. 개선대책 결정(협의체회의 : 안전보건경영 메뉴얼 의사소통 편 참조)

- (1) 제출된 위험성평가서를 안전관리자는 최종 취합, 정리하여 위험성평가등급에 따른 중점관리 사항(A-C)을 토대로 협의체회의록을 작성한다.
- (2) 안전관리자는 협의체회의록의 중점관리 사 항을 재검토하고 추가적인 위험요인이나 보완사

- 항 그리고 개선대책 중 적정한 사항에 대해 협의 사항에 기록하여 배포한다.
- (3) 안전관리자는 협의체회의 종료 전 차기회의 일정을 설명한다.
- (4) 안전관리자는 협의체회의 일자와 장소를 참석대상자(현장소장/각 공정 관리감독자/협력업체소장)에게 2일전 유·무선, FAX로 재차 통보하여 참석하도록 한다.
- (5) 현장소장의 주관과 안전관리자의 진행하에 혐의체회의를 실시한다.
- (6) 안전관리자는 협의된 사항과 업무분장 내용을 협의체회의록에 기록, 보관한다.
- (7) 안전관리자는 현장소장의 결재를 득한 협의 체회의록 사본을 매 분기 다음 달 7일까지 안전팀 으로 송부한다.

# 사. 협의된 개선대책 시행

관리감독자 및 협력업체 소장은 협의체회의에서 제기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해당 공종의 개선 대책을 처리기간 안에 조치한다.

#### 아. 적정성 검토(이행여부 점검)

- (1) 안전관리자는 협의체회의록을 기준으로 안 전보건점검표를 작성하여 사본을 관리감독자 및 협력업체소장에게 배포한다.
- (2) 관리감독자는 일일안전보건점검표상의 개선 대책 시행여부를 학인하고 점검표를 작성하여 차 기 협의체회의 1일 전까지 안전관리자에게 제출 한다.
- (3) 안전관리자는 주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개 선사항의 조치와 일일안전점검이 제대로 시행되 었는지 확인하고, 주간 안전점검표를 작성한다.
- (4) 안전관리자는 제출된 일일 안전보건점검표 와 직접 점검한 주간 안전보건점검표 중점관리사



항의 개선여부와 점검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확 인 후 현장소장에게 결재한다.

- (5) 협의체회의시 전회 미결사항을 먼저 재검토 한 후 금회 협의체회의 안건을 논의한다.
- (6) 관리감독자, 협력업체소장은 일일공정회의, 작업시작전 5분 미팅 등을 통해서 안전보건점검 표 상의 당일 작업상 위험요인과 개선대책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.

### 자. 위험성평가자료 취합 · 정리

- (1) 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서 자료와 협의체 회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대책을 함께 취합하여 정리한다.
- (2) 안전관리자는 당해 연도 데이터자료를 명년 3월 10일까지 안전팀으로 송부한다.

#### 3. 위험성평가 방법

#### 가. 실시시기

- (1) 신규 공사현장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조직 구성 후에 최초로 실시하다.
- (2) 위험성평가는 2회/월 실시한다. 단, 2회 /월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,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팀 장의 승인을 받은 후, 현장 안전보건 경영메뉴얼 에 운영주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. 즉, 동 일 공정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1회/월 실시 할 수 있다.
- (3) 법규의 제·개정으로 위험성평가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 위험성평가를 추가실시한다.
- (4) 주요 공정의 변경시공, 운영설비·장비의 신설 또는 변경에 실시한다.

#### 나. 실시대상

(1) 현장의 기준

각 공구별로 나누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2) 협력업체 기준

참여대상 협력업체는 공정에 참여하는 전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.

(3) 공사의 특성상 단기간의 작업(2주 미만)은 이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해당 공정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현장의업무분장된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성하고, 의견검토 후 소장의 결재를 득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. 단, 공기 2주 이상의 협력업체는 위험성평가 메뉴얼에 의해 실시한다.

# 다. 실시방법

- (1) 평가자인 협력업체 소장은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 작성방법에 의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, 위험성평가는 "사고발생 가능성"과 "피해의 심각성"을 평가한 후 이들을 조합하여 위험성에 대한 등급을 결정한다.
- (2) 협력업체가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직접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하여 업무지시 형태로 운영한다.

#### 라. 피해형태 분류

추락, 전도, 충돌, 협착, 감전, 낙하·비래, 붕괴·도괴, 무리한 동작, 화재·폭발, 절단, 교통사고,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며, 기타에는 절단, 중독, 직업병, 유독물질·가스 흡입 등으로 한다.

\*\*금월호에 이어 다음호에는 위험성평가 기준과 위험성평가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해 게재됩니다. 또 한, 아파트 현장에 대한 작업분류표와 함께 위험성평 가서 샘플을 소개합니다.